

동작구의회공고 제2020-3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회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창의적으로 노력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동작구민(학생),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표창함으로써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표창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동작구외 거주자나 단체 또는 기관에게 수여(안 제2조)
- 나. 표창장의 수여 대상 범위 추가(안 제5조)
- 다. 표창의 방법 및 부상(안 제8조)
- 라.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추가(안 제12조)
- 마. 이중 표창의 금지 규정 신설(안 제14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회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동작구의 거주자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표창장의 수여대상)”을 “(표창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6.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6조의 제목 “(상장 수여대상)”을 “(상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경우

제7조의 제목 “(감사장 수여대상)”을 “(감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회발전”을 “의회 및 구정발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회활동”을 “의정활동”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표창장등의 서식)”을 “(표창의 방법 및 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한다)를”을 “한다)를 의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공적심사) ①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 자를 표창한다.

②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신설>

③·④ (생략)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삭제>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 한  
다)를 의회에 -----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삭제>

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

<p><u>제14조</u> · <u>제15조</u> (생략)</p>	<p><u>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u></p> <p><u>제15조</u> · <u>제16조</u>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p>
---------------------------------------	--